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95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전재수・이기헌・허 영

추미애 · 위성곤 · 강유정

이학영 · 김재원 · 민형배

채현일 • 박홍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아동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의학원, 체육시설 등 교육비의 경우 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통계청 조사 결과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취지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을 예능학원을 포함한 학원과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50 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 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③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	
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	
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	
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	<u>.</u>
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1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	
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	
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	

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 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 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 라. (생 략) <u><신 설></u>

2.·3. (생략) ④ ~ ① (생략)

	<u>50</u>
<u>0만원</u>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
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
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① (현행과 같음)